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55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10. 06.	회부연월일	2022. 10. 06.

1. 제안이유

-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,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에서 명시된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, 필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 명시를 지양하고, 위원회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를 폭넓게 명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명 중 ‘필수노동자’ 를 ‘필수업무 종사자’ 로, ‘필수업종’ 을 ‘필수 업무’ 로 명칭 변경하고 필수업무에 대한 정의를 ‘대면업무’ 로 한정하거나 구체적인 업종 명시규정을 삭제하였으며
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가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은 재난 발생 시에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함과 함께, 위원회의 위원장은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거 논산시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함.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에서 명시된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, 필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 명시를 지양하고, 위원회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를 폭넓게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9조, 제10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56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10. 06.	회부연월일	2022. 10. 06.

1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연장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및 제159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57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10. 06.	회부연월일	2022. 10. 06.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육성 및 지원대상이 되는 “청년기업”의 요건 중 하나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청년기업의 개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년기업의 개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기업일 것”을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부터 제1의4에 따른 “중소기업자, 소기업, 벤처기업일 것”으로 변경 함.

3. 검토의견

- 청년기업의 개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년기업의 개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		
의안번호	제158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10. 06.	회부연월일	2022. 10. 06.

1. 제안이유

○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,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해 사전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특례보증 내용

- 1) 논산시 :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/ 출연금 : 2,000백만원
- 2) 충남신용보증재단
 - 특례보증한도액 : 출연금의 12배까지 융자지원
 - 보증비율 : 보증금에 대한 100%
 - 보증수수료 : 연 0.8%(시중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)

나. 보증조건

- 1) 한도액 : 소상공인 1개 업체당 1회 5천만원 이내
- 2) 보증기간 : 최장 5년 이내

다. 출연대상 및 출연방법

- 1) 대상 :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
 -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(상시근로자 10인 미만)
 - 기 타(상시근로자 5인 미만)
- 2) 출연방법 :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계좌이체

3. 검토의견

- 소상공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및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, 「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한 조례」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